

3차 개정 2017. 12.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

발간사

JW그룹은 201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I』을 제정하여 배포한 이래로 변화되는 규제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전 임직원에게 공지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I』은 JW그룹의 모든 회사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의 주요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과 영업/구매/관리/기획 등 모든 업무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놓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서입니다.

JW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I』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령의 주요 내용과 담당 업무의 유형별로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와 판례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JW그룹사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정거래 당국의 업무 진행 흐름을 설명하였습니다.

JW그룹 임직원 여러분!

본 자율준수편람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어 JW그룹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W그룹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장

목차

발간사	i
개정 이력	ii
목차	iii
I.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이해	01
1. 자율준수편람의 의의	01
2. 이해당사자	01
3 CP (Compliance Program) 운영의 필요성	02
4 CP의 7대 핵심요소	02
5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04
5-1 경감제도란	04
5-2 인센티브(CP운영고시)	04
5-3 감경 예외 대상	04
II. JW그룹 Compliance Program	05
1 JW그룹 CP운영의 미션 및 목표	05
2 CP조직 소개	05
3 JW그룹의 CP	06
3-1 CP의 범위	07
3-2 CP 프레임워크	07
III. 업무별 주의사항	08
1 공정거래 제도의 이해	08
1-1 공정거래법의 역할	08
1-2 공정거래법의 구조	08
1-3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09
1-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11
2 공정거래 관련 부문	13
2-1 거래상대방과의 불공정 거래행위	13

2-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20
2-3 법 위반시 제재	22
3 하도급 관련 부문	23
3-1 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23
3-2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3
3-3 하도급거래 절차	25
3-4 경쟁입찰시 유의사항	32
3-5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34
4 표시광고 부문	36
4-1 부당한 표시 광고	36
4-2 의약품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40
4-3 의료기기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42
4-4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43
5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44
5-1 법률 적용 대상	44
5-2 부정청탁의 금지	45
5-3 금품등의 수수 금지	46
5-4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47
6 제조물책임 관련	47
6-1 법률 적용 범위	47
6-2 결함 판단 사례	48
6-3 면책 사유(제4조)	50
6-4 징벌적 손해배상(제3조 제2항) - 2018. 4. 19 시행	51
6-5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 - 2018. 4. 19 시행	52
6-6 공급업자 책임(제3조 제3항) - 2018. 4. 19 시행	52
<hr/>	
부록 자율준수 점검표 CHECK-LIST	54
공통 준수사항	54
인사 / 노무	56
구매	57
생산 / 품질보증	58
재무 / 회계	58
지적재산권	59
IT	59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6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의 이해

1 자율준수편람의 의의

● 정의

↳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관계 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목적

↳ 이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반부패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임직원이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

↳ JW그룹을 말한다.

● 사업회사

↳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경쟁업체

↳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거래업체

↳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 수탁사업자, 수급사업자 기타 제3자 등의 거래 상대방을 말한다.

● 직원

↳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경쟁당국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집행 및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3 CP (Compliance Program) 운영의 필요성

- **회사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 ↳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지속적 발전
-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인정되거나 실무자들이 과실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CP의 7대 핵심요소

-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생산, 영업, 구매,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배포**
 -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회사 인트라넷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율준수편람은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계법령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관리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임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감시 및 감독 시스템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입니다. 따라서 감사(Audit),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반기당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제재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자율준수위원회,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문서관리 시스템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서, 사진, 컴퓨터파일 등을 기록,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CP등급평가지 CP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5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5-1 경감제도란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5-2 인센티브(CP운영고시)

● 직권조사 면제

CP등급 (등급평가 결과 A 이상)	직권조사 면제기간
A등급 이상	1년
AA등급 이상	1년 6개월
AAA등급 이상	2년

직권조사 면제 대상 법규 -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기타고시(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행위

● 공표명령 하향조정

공표명령	하향조정
간행물 공표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공표기간 단축

공표명령 하향조정 대상 법규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할부거래법, 가맹거래법, 약관규제법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3 감경 예외 대상

- 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ex -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감경대상 제외
(표시광고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3. 1.시행)



JW그룹

Compliance Program

1 JW그룹 CP운영의 미션 및 목표

- CP운영 미션

↳ “준법·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문화 향상에 공헌한다.”

- CP운영 비전

↳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CP준수 Healthcare Group”

- CP운영 목표

↳ “기업문화로의 준법·윤리경영 정착”

2 CP조직 소개

- JW그룹 CP전담조직 현황

- JW 홀딩스 : 준법관리실 CP팀 (자율준수관리자 1명, CP담당자 2명)
- JW중외제약 : 경영기획실 CP팀 (자율준수관리자 2명, CP담당자 7명)
- JW신약 : 경영기획실 CP팀 (자율준수관리자 1명, CP담당자 2명)
- JW생명과학 : 경영기획실 CP팀 (자율준수관리자 1명, CP담당자 2명)
- 기타 사업회사 : 자율준수관리자 각 1명, 자율준수담당자 각 1~2명 임명

- JW그룹 자율준수관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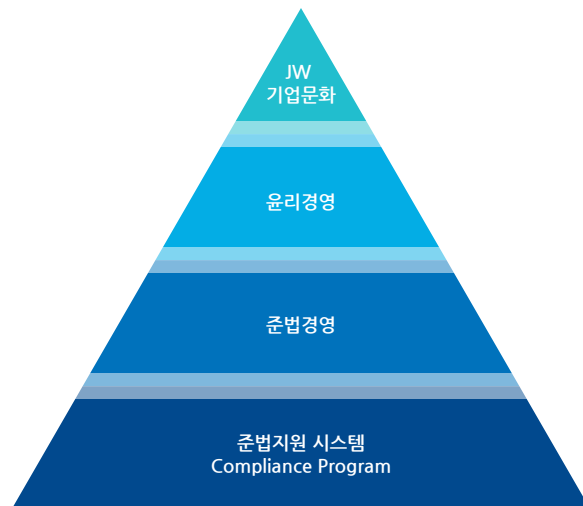
회사	직함 / 직위	성명
JW홀딩스	준법관리실장 / 상무	이 세 찬
JW중외제약	대표이사 / 사장 준법관리실장 / 상무	한 성 권 이 세 찬
JW신약	경영기획실장 / 이사대우	이 명 균
JW생명과학	경영기획실장 / 수석상무	김 용 관
JW메디칼	경영기획실장 대행 / 부장	김 광 일
JW바이오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 대행 / 부장	김 기 성
JW케미타운	공장장 / 부장	방 경 문
C&C신약연구소	기획관리팀장 / 부장	김 주 수

● JW그룹 자율준수담당자 현황

회사	직함 / 직위	성명
JW홀딩스	CP 팀장 / 부장대우 CP 담당원 / 과장	서 관 원 정 현 호
JW중외제약	CP 팀장 / 부장대우 CP 담당원 / 차장 CP 담당원 / 과장 CP 담당원 / 과장 CP 담당원 / 대리 CP 담당원 / 주임 사내변호사	서 관 원 김 영 광 장 호 진 정 현 호 심 재 현 김도연 김희영
JW신약	CP 팀장 / 과장 CP 담당원 / 대리	이혁준 심인규
JW생명과학	CP 담당원 / 과장 CP 담당원 / 사원	배정훈 황윤동
JW메디칼	영업관리팀장 겸 CP 담당원 / 부장대우 영업관리 겸 CP 담당원 / 사원	노 경 호 한 창 호
JW바이오사이언스	영업관리팀장 / 과장 영업관리 겸 CP 담당원 / 사원	정 대 연 백 지 연
JW크레아젠	경영기획 겸 CP 담당원 / 과장 경영기획 겸 CP 담당원 / 사원	유 미 정 황 광 현
JW케미타운	경영관리 겸 CP 담당원 / 과장	김 재 만
C&C신약연구소	기획관리 겸 CP 담당원 / 과장	모 길 서

3 JW그룹의 CP

↳ JW그룹은 “CP준수 없이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CP원칙을 기준으로 준법/윤리경영을 그룹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3-1 CP의 범위

↳ JW그룹의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2 CP 프레임워크

↳ JW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과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JW중외제약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자율준수관리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JW홀딩스 준법관리실장이 공동 자율준수관리자로서 JW홀딩스 CP팀과의 협업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CP업무의 기본 프레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JW그룹의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영업본부장으로 구성되는 자율준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CP이슈를 공유하고 CP위반 관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주의사항

1 공정거래 제도의 이해

1-1 공정거래법의 역할

↳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 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기업 및 관련 임직원들 모두에게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산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모든 직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만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 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 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의 구조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 상호출자금지 - 출자총액제한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해소 -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가격남용 / 출고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 출고 거래 등의 제한 등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3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1-3-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시장지배적 사업이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100분의 10미만인자 제외)인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당해 시장 내에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능력 혹은 규모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 남용행위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3-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①주식취득, ②임원겸임, ③합병, ④영업양수, ⑤회사신설 등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인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다른 회사의 임원겸임의 경우, 합병 및 영업양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등은 이를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조항(제12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추정조항(제7조 제4항)]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제14조)하고, ②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 등을 제외한 상호출자를 금지(제9조)하고 있고, ③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금지(제10조의2)하고 있으며, ④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현황 및 국내계열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습니다.

1-3-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①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②제품 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 지급조건 결정행위 ③제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설비의 신 증설 및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제품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⑧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신설 96.12)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제19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 약정하는 계약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19조 제4항)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제19조 제5항)과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제22조의2)을 두고 있습니다.

1-3-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공정거래법은 ①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 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⑦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금지함은 물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제23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23조 제2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 제3항)하고 있습니다.

1-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1-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 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규제 내용

규제 내용 I (9개 작위의무)	규제 내용 II (12개 금지의무)
1. 서면교부, 서류보존(3년) 의무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2. 선급금지급의무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3.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4. 부당반품 금지
5.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통지)의무	5. 부당감액 금지
6.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8.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8.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9.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10. 보복조치 금지
	11. 탈법행위 금지
	12.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1-4-2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능을 보강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방지하는 등 시장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독립시켜 1999년 2월 5일자로 동 법을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제 내용

- ①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
- ②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 ③ 표시 광고내용의 실증
- ④ 사업자단체의 표시 광고제한행위의 금지

1-4-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계약내용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등하였다면 고객이 의도 하였을 진정한 계약내용을 국가가 회복시켜 줌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제 내용

- ①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 ②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사용금지

1-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합니다.

규제 내용

-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③ 전자문서 활용관련 소비자보호조항 고지
- ④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1-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제 내용

-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청탁 행위
- ②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③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④ 공직자 등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공정거래 관련 부문

2-1 거래상대방과의 불공정 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 ②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③부당한 고객유인행위, ④거래상지위 남용행위, ⑤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 ⑥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자신이 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교사행위)도 금지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등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세분하면 총 2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지정한 28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가운데 회사가 위반하기 쉬운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 판매목표강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지역 상대방제한, 차별적 취급행위, 사업활동 방해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 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범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4조)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4조의2)

• 형사처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

2-1-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 사업자가 가능한 한 많은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마케팅활동의 일부로서 인정되지만,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반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사례에는 현상·경품·리베이트 제공에 의한 고객유인 등이 있는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제공되는 이익의 크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허용될 정도의 것인가 또는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방해할 정도의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경품류의 제공은 소비자의 가격·품질에 의거한 구매선택을 저해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고시하여 경품류 제공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심결례

동아제약 등 14개 대형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 공급하는 의약품에 납품함에 있어서 종합 병원에 약품 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 단합대회비 비품구입비 학술행사비 등의 지원을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이다. (1994.3.3, 의결 제94-25/26)

2-1-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나목) 예컨대, 제약회사가 자신의 약품을 도매상에게 판매하면서, 도매상에게 일정한 지역 또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 영업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속행위 그 자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거래상대방 간의 경쟁의 감소(소위 ‘브랜드 내 경쟁의 감소’)에 그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쟁저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결례

우리자동차판매(주)는 서울지역 각 영업소의 과다경쟁방지를 위해 영업용신규차량판매에 있어 각 영업소의 자기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자기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본부장과의 협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중단, 실적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판매지역제한을 실시하였다. 판매지역은 스스로의 영업능력에 따라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영업소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시 인센티브 지급 중단 등의 제재를 취한 행위는 영업소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고객확보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1995.9.20, 의결 제95-202)

(주)미원이 대리점별로 판매지역을 설정하고 정해진 판매지역을 벗어나 판매하였을 경우 벌칙을 부과한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됨. (1993.8.25, 의결 93-161호)

2-1-3 판매목표 강제행위

↳ 판매목표 강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 예컨대, 사업자가 자신의 특약점, 전속대리점 등의 유통망에 대해 목표치를 제시하

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특약관계 혹은 대리점 계약, 상품공급 계약의 해지 기타 인센티브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결례

대리점에게 매월판매목표를 설정하여 통보하고 일정기간 내에 이를 판매토록 강요한 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는 정해진 인센티브를 주지 아니하거나 대리점을 교체, 합병, 지역분할, 공동판매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1998.2.18, 의결 제98-38호)

2-1-4 차별적 취급행위

↳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가격, 수량, 품질,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예컨대,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공급사업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나 자기의 계열회사에게 다른 회사보다 우선 공급하거나, 가격을 현저히 유리하게 책정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결례

(주)두산은료는 자기와 단독으로 거래하는 편의점인 Family Mart와는 일정량 이상 판매시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물량별 거래가격체계를 약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자기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복수거래편의점에는 동 가격체계에 따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형태에 따라 거래처별로 상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행위가 불리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복수거래업체로 하여금 동업계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당해 거래처의 경쟁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별 차별적 취급을 한 것으로 판단함(1994.10.28, 의결 제93-241)

(주)라미화장품이 전직 직원의 신규특약점과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특약점의 경우 통상의 신규특약점에 대한 지원 외에 덤을 준 것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등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1999.1.7, 의결 제99-12호)

삼미종합특강(주)은 계열회사인 (주)삼미금속이 (주)삼미로부터 구입한 열연강판을 압연 가공하여 공급하는 반면, (주)삼미금속의 경재업체인 타사업자들에게는 냉연강판 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실제구입단계에서 계열회사인 (주)삼미금속을 유리하게 하였는바, 비계열사보다 계열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라고 보았음(1987.7.8, 의결 제87-41호)

판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판시 (대법원 2001.1.5, 98두17869)

SK텔레콤(주)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자신의 계열회사인 SK글로벌(주)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무이자할부판매 한 경우에만 그 할부채권을 매입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공정위는 계열회사를 위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소에서 대법원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 2004.12.9.선고 2002두12078)

2-1-5 사업활동 방해행위

-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거래상대방과 경쟁사업자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사업자 자기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위법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2-1-5-1 유형

● 기술의 부당한 이용

-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가목) 예컨대, 사업자가 자기에게 원료재나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거래선이나 하청업체의 기술을 그 회사 직원에게 돈을 주고 빼어낸다든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도용하여 자기가 생산하여 다른 수요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기술을 도용당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이 방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나목) 예컨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에게 그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제조·영업기법이 담겨 있는 자료나 설계도 등을 가져오면 높은 직급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자료나 설계도 등을 가지고 온 인력을 채용하여 자기가 직접 생산·판매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거래처 이전 방해

-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다목) 예컨대, 대리점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거래선을 이전하려 하자 부동산의 담보해지를 고의로 지연시켜 거래선 이전을 방해한 경우, 대리점 관계를 청산하려는 거래상대방이 부도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그 대리점의 채권자들이 그 대리점에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 대리점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위 세가지 유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 예컨대, 자신이 입찰에서 떨어지자 경쟁업체를 부적격 업체라고 비방하면서 낙찰자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 그리고 자신의 매장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매장에 납품하거나 입점하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결례

(주)교보문고 등 대형서적판매 3사는 각종 서적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들에게 강요하여 자기의 경쟁사업자의 서적할인 판매행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될 정도로 방해한 행위는 사업활동의 방해 행위이다.(2000.12.28, 의결 제2000-183호)

(주)현대엘리베이터는 자신이 제조, 설치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자신과의 유지보수, 관리 계약이 해지되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다른 업체와 정당하게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지를 통하여 ‘학연, 지연 심지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도 모르게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와 계약’, ‘그 다른 보수회사에서 유지관리하다 어린 생명까지 잃은 일 있음’ 이라는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업자를 비방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1998.4.2, 의결 제98-56호)

2-1-6 부당염매행위

↳ 부당염매라 함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가목) 규제이유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방해하여 독점적 지위를 취득한 후, 다시 높은 가격으로 손실을 보상하려는 의도 또는 경쟁자의 고객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단행하는 가격인하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격경쟁 그 자체는 사업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쟁수단으로, 사업자가 신기술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제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i) 계속 거래상의 부당염매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가목 전단) (ii) 기타의 부당염매로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규제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호가목 후단)

시장가격으로 계속 공급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경우나 상대방 사업자의 덤핑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염매행위인 경우에는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원 입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원 입찰이라도 무조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형성·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심결례

홈플러스 안산점이 2000.8.30.부터 같은 해 11.2.까지 약 2개월간 코카콜라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구입원가인 984.5원/1.5ℓ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390원/1.5ℓ에서 890원/1.5ℓ에 판매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2001.2.13, 의결, 2001유거0037)

판례

당해 회사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세를 확장하여 오면서 대규모 지리정보시스템 기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하는 등 많은 매출을 기록한 대기업과 거의 대응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 대기업의 사세가 위 회사에 비하여 월등하고, 또 위 대기업이 기발주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하였다 하여, 입찰예정가가 약 15억여원 정도인 소프트웨어를 단 1원에 공급하기로 한 위 회사의 응찰행위가 그 존립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대항염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1-7 부당지원행위

↳ 부당지원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인력 등의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부당지원의 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로서 계열·비계열을 구분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정상적으로 현저한 규모로 경제적 급부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2-1-7-1 유형

●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예시

- 우량회사(지원주체)가 부도직전에 있는 계열사(지원객체)에게 시장금리보다 현저하게 저리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행위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치하는 경우
-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부당한 자산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상품·용역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예시

- [기업어음고가매입] 지원주체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즉,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이나 친족독립경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 [주식 고가매입]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 [전환사채의 고가매입]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 [부동산 저가매도] 계열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

●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행위

판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4.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우선 지원객체가 임대차보증금 수수행위를 통하여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제상 이익의 확정은 지원주체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형성되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1-7-2 계열사간 거래시 유의사항

● 계열사에 물량물아주기 관련 사전 검토사항(현저한 규모)

-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의계약은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른다.
- 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를 비교하여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 상품·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계열사를 매개로 하는 통행세 관련 사전 검토사항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구체적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함.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 (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는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2-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2-2-1 원칙적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한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으로 특히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가까우며, 독립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매가격책정을 구속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법제2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당연위법행위입니다.

2-2-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 직접적 강제 / 간접적 강제

- 직접적 강제
 - 재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 간접적 강제
 -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경우

● 최고가격제 / 최저가격제

- 최고가격제
 -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경우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익이고 재판매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최저가격제
 -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제도. 이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재판매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지정가격제
 - 재판매사업자에게 특정가격을 지정하고 지정된 특정가격 대로만 판매하게 하는 제도.

2-2-3 위탁판매 및 대리상의 문제

↳ 위탁판매의 위탁자가 판매가격을 지시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그 가격대로 판매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위탁판매시 지정가격이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판매가격유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속대리점계약의 경우에는 공급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판매가격 지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3 법 위반시 제재

2-3-1 시정조치

-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2-3-2 과징금

-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외)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위반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 매출액이 있는 경우 -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 매출액이 없는 경우 -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 위반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2항] :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형별로 범위반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됨

2-3-3 벌 칙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아래와 같은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위반한 자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 제4호]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 규정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2-3-4 양벌규정

- ↳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도급 관련 부문

3-1 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 ↳ 하도급법은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2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 주된 의무사항

의무사항	개요
서면의 교부(제3조)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서류의 작성·보존(제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대금지급(제13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지연이자 지급(제1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을 경과한 한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급금에 15.5%를 곱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14조)	발주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세 등 환급액 지급(제15조)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16조)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함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제16조의2)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

●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개요
부당한 특약 금지(제3조의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제4조)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제5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수령거부 등 금지(제8조)	주문한 상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제11조)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유상지급원자재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금지(제12조)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상계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 등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제12조)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이용시키는 것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금지(제12조의2)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제12조의3)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
하도급대금지급 지연금지(제13조 제1항)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제13조 제6항)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작업 금지(제16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문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후에 재작업을 시키는 것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제17조)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알리거나 서면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주기회제한, 수량삭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3-3 하도급거래 절차

3-3-1 체결단계

3-3-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1. 구두계약/발주시에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 수령일 및 수령 장소,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완료기일,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어음금액과 어음만기일,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하는 경우 품명/수량/대가/인도기일/결제기일/결제방법,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2.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기일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계약서면 등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기조정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 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서면관련 주요점검 및 행동지침

-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거래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특약이나 부관 등에 하도급법 위반 소지 내용은 없는지
- 계약서 교부 시기 및 내용
 - 업무 위탁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내용은 발주서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 계약 추정제도 관련
 - 구매 담당자가 계약 추정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 구매 담당자가 사전 발주 또는 구두 발주한 사실은 없는지
 - 사내 접수 문서 관리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하도급 관련 문서 접수시 관리 프로세스는 정비되어 있는지

● 하도급법상 발급대상 서면의 유형과 주요 기재의무 사항

거래개시 (제3조)	거래과정 (제8~16조)
①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대가 지급방법과 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요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 (제9조) ⑤ 감액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 (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제16조)

보존대상 서면 : 14개 유형

보존대상 서면의 종류, 보존기간, 보존방식 등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 및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1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법 제8조
4	검사결과 통지서	법 제9조
5	감액 서면	법 제11조
6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법 제12조의3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3호
10	선금금, 어음할인으로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8호

3-3-1-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하도급법 제4조)

1.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당하게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하도급법 개정안 [법률 제11842호, 2013.5.28.]에 따라 2013. 11. 29.부터 부당하게 단가인하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대금 결정의 합리성 여부
 - 단가 인하시 합리적 사유는 존재하는지
 - 단가 인하에 대해 하도급 업체가 이를 인정하는지
 - 단가 인상요인 발생시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 단가 인상 및 인하 시 근거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단가산정 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기하는지

3-3-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3-3-2-1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 (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 구매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함이 곤란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을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발주 시스템 점검
 - 구두 발주, 사전 발주 등 발주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구두 발주나 사전 발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방법은 어떠한지
-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발생 여부
 - 발주 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지
 - 행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는지

3-3-2-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구매강제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거래내역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내용 이외에 물품이나 장비 기타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시 거래 사유 및 거래 대금은 적정한지
- 거래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 물품 등을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3-3-2-3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정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 하도급법 개정안[법률 제11842호, 2013. 5. 28.]에 따라 2013. 11. 29.부터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당 반품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반품에 대한 관련 임직원의 인식
 - 구매부서나 생산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기 수령한 제품 등을 반품하고 있지는 않는지
 - 사전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claim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 반품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이나 전차 등 존재 여부
 - 반품의 귀책사유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 Claim 협약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교부하고 있는지

3-3-2-4 부당감액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됩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법률 제11842호, 2013.5.28.]에 따라 2013. 11. 29.부터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당 감액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자에게 하도급 대금감액을 독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 회사의 결손이나 거래처 요구 등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3-3-2-5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 (하도급법 제12조의3)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TIP

기술자료의 의미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품질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기술자료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의3)

3-3-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3-3-3-1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연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를 적용)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금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선금금 발생 유무
 - 하도급업체와의 거래가 발주처가 있는 거래인지
 - 발주처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 선금금 지급의 적정성
 - 선금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 지급시기는 적정한지
 - 선금금을 어음이나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시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

3-3-3-2 하도급대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13조)

-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 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 x 0.075 x 지연일수/365일

● 지연이자 지급의무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1회 이상 일괄 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x 0.155 x 지연일수/365일

●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급의무

-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율 =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

3-3-3-3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법 제16조의2)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3-4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하도급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서 내지 합의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대물변제의 계약서 기재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시 대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 계약서 기재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 대물 변제시 적법성 여부
 - 계약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는지
 -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에 대한 평가액이나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지는 않는지

3-4 경쟁입찰시 유의사항

3-4-1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3-4-1-1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1.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됩니다.

2.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 제공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3. 입찰가격 조정 등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안됩니다.

4.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5.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게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른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3-4-1-2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1.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안됩니다.
2.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4-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3-4-2-1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1.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됩니다.

2.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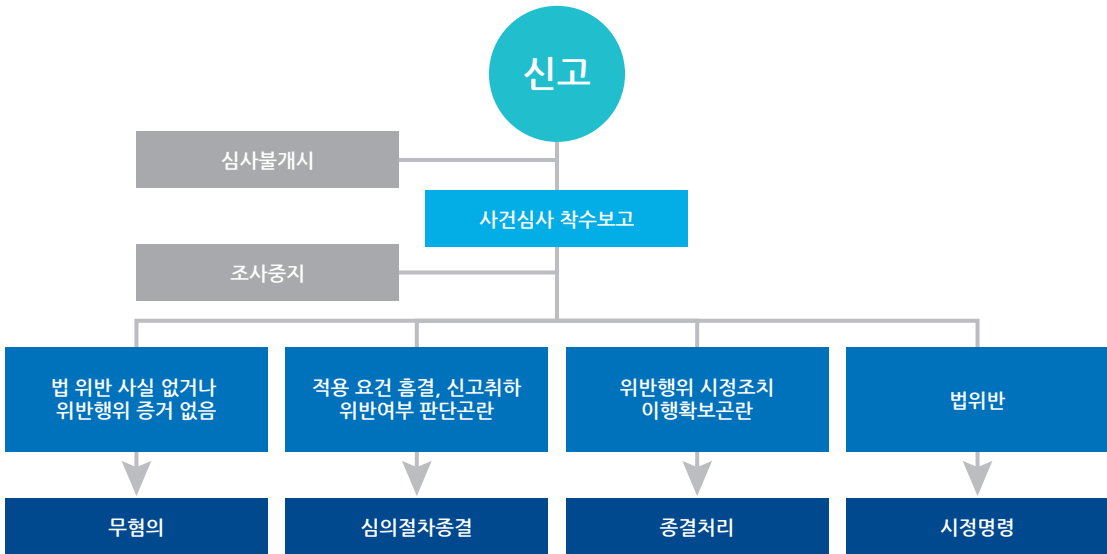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됩니다.

3-4-2-2 수주 수량 등에 대한 행위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3-5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3-5-1 하도급 사건 처리절차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3-5-2 시정조치

- ↳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시정조치 사실 공표

3-5-3 과징금 부과

- ↳ 하도급법 제25조의3에 따라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및 중대성,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 원칙적 부과대상

-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 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횟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을 판단하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과징금 산정기준

↳ 기본산정기준 : 하도급대금의 2배 X 범위반금액 비율 X 부과율

중대성 정도	부과율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 이상)	60%이상 80%이하	3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4점 이상 2.2점 미만)	40%이상 60%미만	1억원이상 3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4점 미만)	20%이상 40%미만	2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중대성 정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라 산정

3-5-4 벌점 부과

↳ 범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게 됩니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점수(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경고 (서면실태조사)	경고 (신고 및 직원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	0.5	1.0	2.0	2.5	3.0

※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는 5.1점

3-5-5 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의 범위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부당반품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3-5-6 신고포상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지급대상 행위유형	포상한도	지급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반품 • 기술유용 	(과징금 부과 건) 5억원, (과징금 미부과 건)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업자

※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함

4 표시광고 부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표시·광고의 적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1 부당한 표시 광고

↳ 부당한 표시·광고는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기타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4-1-1 용어의 정의

● 표시

↳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또는 내용물 포함), 또는 사업자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광고

↳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매개를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선전 또는 제시하는 행위

- 신문, 잡지, TV, 라디오, 방송
- 인터넷 또는 PC통신
-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또는 연극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 견본, 전단, 팸플릿, 입장권
- 방문광고, 실연에 의한 광고
- 기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광고물

4-1-2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

↳ 자기의 것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비방적인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4-1-3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

● 가격의 표시·광고

-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허위의 시가와 자기의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허위의 경쟁사업자 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

●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재료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체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부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그런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 규격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한다고 하거나 그런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실제 크기나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조일자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손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 ‘수도’ 또는 ‘반자동’의 생산설비로 제조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시설’ 또는 ‘최신컴퓨터 생산 시설’로 생산된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술제휴 또는 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개발시 일본 A사에서 일정기간 기술연수 한 사실을 “일본 A시와 기술제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기계로 만든 상품을 수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광고하여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당해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외국회사와 기술제휴 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
-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체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
-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 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제조사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TIP

원산지 판단 기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다만, 당해 상품의 원산지가 일반적으로 국명보다 지명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해 상품의 원산지를 국명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원산지를 원산국으로 간주한다.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 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

●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한 경우
- 폭발 기타 위험 또는 위험한 상품 등에 동 내용물이 폭발, 위험 또는 위험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 허위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단, 객관적 근거를 본인이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 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취하여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

-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XX회사”와 같이 경쟁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4-2 의약품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4-2-1 과장광고 등의 금지 (약사법 제68조)

- ↳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의약품수입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4-2-2 광고 범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별표7)

- ↳ 표시광고법,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전문 의약품(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다)이나 원료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공통사항

-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 공인,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의약품

-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용자의 감사장(感謝狀)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하여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의약외품

-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인력,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사업실
- 적,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4-2-3 광고의 심의 (약사법 제68조의2)

↳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3 의료기기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4-3-1 기재 및 광고의 금지 (의료기기법 제24조)

↳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서류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안됩니다.

4-3-2 광고 범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6의3)

-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 법 제6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특정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4-3-3 광고의 심의 (의료기기법 제25조)

↳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4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4-4-1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금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 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 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 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4-4-2 표시·광고의 심의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 ↳ 우리 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빈발하는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2016.9.28.시행)

5-1 법률 적용 대상

5-1-1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5-1-2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TIP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가지)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5-2 부정청탁의 금지

5-2-1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14가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인·허가, 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5-2-2 위반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들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의 유형과 제재

구성 요건		제재 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일반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3 금품등의 수수 금지

5-3-1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9조)

5-3-1-1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 규정

5-3-1-2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제재를 받습니다.

5-3-1-3 사고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음식물: 3만원 이하(식음료, 다과, 주류 등 포함)
 - 선물: 5만원 이하(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 가액 합산)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까지 허용

5-3-2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청탁금지법 제10조)

-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위반의 유형과 제재

제재 대상	제재 수준
직무관련 여부 및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는 행위	500만원 이하 과태료

5-4 양벌규정(청탁금지법 제24조)

↳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회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6 제조물책임 관련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닙니다.(2000.1.12 제정, 2017.4.18 일부개정)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1 법률 적용 범위

6-1-1 제조물이란(제2조 제1호)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 “완성품의 원재료 및 부품”, “가공된 농축수산물(예: 조미김)
- “미가공 1차 농축수산물”, “부동산”, “소프트웨어”는 적용대상 아님

6-1-2 제조업자란(제2조 제3호)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끔 표시한 자

6-1-3 결함이란(제2조 제2호)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6-1-4 손해란(제3조 제1항)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 ○, 제조물 자체 손해 ×

판례

-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 사업자가 노래방기기 제작자가 제조한 노래방기기를 판매하다가 노래방기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사업중단 등 손실을 입은 사건에서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 이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9.2.25. 선고 97다26593 판결)
- 발코니 확장공사에서 마루제품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를 한 지 약 3개월 후부터 새로 시공된 부분의 마루가 썩거나 변질, 변색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마루 교체비용, 공사대금 수금 지연비용, 영업손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주장 했으나, 법원은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09.8.20. 선고 2008가합27878 참고)

6-2 결함 판단 사례

● 설계상 결함 판단기준

↳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① 제품의 특성 및 용도, ②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③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④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⑤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⑥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⑦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 **표시상 결함 판단기준**

- ↳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①제조물의 특성, ②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③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④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⑤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게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대법원 2003.9.5. 선고 2002다17333 판결)

6-2-1 자동차 급발진

- ↳ (대법원 1999.2.25. 선고 97다26593 판결)

- **제조상 결함(부정)**

- ↳ 사고 이전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사고 후 점검결과 차량 부품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급발진 조건인 rpm 4,000 이상, 스로틀밸브 개방, 브레이크에 의한 제동 불가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자동차공학상 운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려움

- **설계상 결함(부정)**

- ↳ 시프트록(Shift Lock)은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동을 건 후 자동변속기 레버를 주차위치에서 후진 또는 전진 위치로 변속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주차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변속시키는 과정에서의 급발진 위험성을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시프트록 장착이 합리적 대체설계에 해당하지는 않음

- **표시상 결함(부정)**

- ↳ 취급설명서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걸고 자동차변속기 선택레버를 이동시키라는 지시문구가 기재

6-2-2 고엽제

- ↳ (서울고법 2006.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 **제조상 결함(부정)**

- ↳ 피고 몬산토가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제조, 공급함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가 의도한 설계는 없었고, 피고 몬산토가 그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의도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었음도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의도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피고 몬산토 공급의 고엽제에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도 이유없음

- **설계상 결함(인정)**

- ↳ 피고들은 고엽제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2,4,5-T 내 TCDD 함량 기준을 0.1ppm 이하로 설정하는 대체설계를 채용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대 가능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고엽제 내의 TCDD 함량을 0.05ppm 이하로 낮추어 TCDD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 표시상 결함(부정)

↳ 고엽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인 미국 정부에 대하여만 개별적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되었던 것으로서, 고엽제에 포함된 TCDD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피고들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고엽제의 사용방법을 통제할 수 있었던 미국 정부가 피고들에 대하여 고엽제의 위험성이나 그 사용 및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고엽제 용기에 표시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고엽제의 용기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6-2-3 장미비료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31361)

- 표시상 결함(인정)

↳ 이 사건 비료의 발효과정에서 위 비료의 포장지 등에 명시된 암모니아 가스 발생기간인 15일~20일을 훨씬 초과하여 40일 이상 장기간 가스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이 재배하던 각 장미가 이 사건 비료의 살포 및 발효과정에서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위 가스에의 장기간 노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실, 발효과정에서 작물의 생육에 유해한 가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발효 유기질 비료는 이 사건 피해 작물의 경우처럼 이미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 정식되어 생육중인 다년생 화훼작물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이 사건 비료가 원고들의 경우와 같은 재배환경 하에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이상 그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

6-2-4 발마사지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20. 선고 2006가합81863)

- 제조상 결함(인정)

↳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피고의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종아리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제품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6-3 면책 사유(제4조)

1호	미공급의 항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호	개발위험의 항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며,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포함)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2나32662
3호	개발위험의 항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참고판례 : 대전지방법원 2008.5.20. 선고 2006가단91350
4호	제작지시의 항변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면책제한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책주장 제한

※ 면책사유에서의 공급이란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기의 지배 하에 있지 않는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개발위험의 항변(2호) 관련

↳ 합리적 대체설계의 채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물 공급 당시에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적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들이 미국 정부에 고엽제를 납품할 당시 미국의 제초제업계가 2,4,5-T 생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TCDD를 탐색, 제거하여 도달할 수 있는 TCDD 함량의 최저 수준은 0.1ppm 정도였다.(당시 허쿨리스는 0.1ppm 수준의 TCDD까지 탐색, 제거하는 내용의 2,4,5-T 설계를 채택하였고, 실제 그에 부합하게 TCDD 함량 0.1ppm 미만의 2,4,5-T를 생산하였다.) (서울고법 2006.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 법령준수의 항변(3호) 관련

↳ 피고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공급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한 만큼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검정승인을 받은 제품의 크기와 달리 SP 압착링의 후면 외경이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크기로 제작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피고가 검정승인을 받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대전지방법원 2008.5.20. 선고, 2006가단91350)

6-4 징벌적 손해배상(제3조 제2항) - 2018. 4. 19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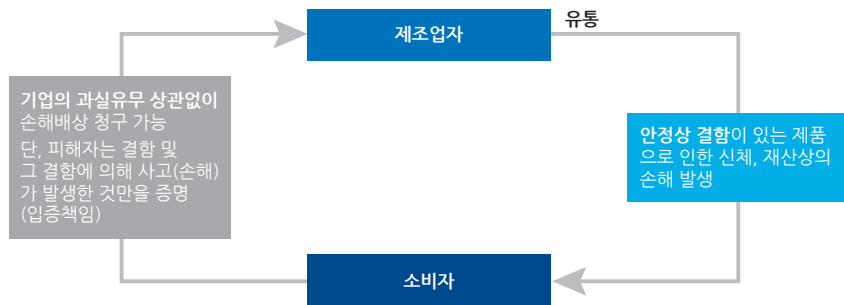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1. 제조업자가
2.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3.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4.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받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6-5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 - 2018. 4. 19 시행

↳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모두 증명할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 **배타적 지배영역**

↳ 결함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구. 제3자의 개입이 배제

● **실질적 지배영역**

↳ 제3자가 제공한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더라도 제조업자의 지배에 속한 원인이 손해 발생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추정(무과실 책임)

6-6 공급업자 책임(제3조 제3항) - 2018. 4. 19 시행

↳ 공급업자는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충적 책임을 부담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록 자율준수 점검표 CHECK-LIST

공통 준수사항

· 회 사 : _____ · 부 서 : _____
 · 작성자 : (직급) _____, (성명) _____ · 작성일 :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온라인구매 / 복무규정	우리 부서는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그룹의 5대 금기사항(폭행, 횡령, 성희롱, 직원간 금전거래, 허위보고(위조))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임직원간 상호 존경하고 협조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 부서는 고객이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임을 인식하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과 행동기준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 부서는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상사가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한다.			
	우리 부서는 상사의 직무유기, 부정한 행위를 방관 또는 은폐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우리 부서는 임직원간에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의 금전거래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금품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상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또는 일부 유보하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임직원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상하간 또는 동료간 욕설, 인신공격 등 무분별한 언어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상습적인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으로 조직분위기를 저해시키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근무시간 중 무분별한 메신저, 채팅, 음란사이트 열람, 온라인 주식거래 등 부적절한 사이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사내외에서 지위남용 또는 업무관계를 이용한 불건전한 남녀관계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회사의 승인 없는 겸업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회사와 임직원 또는 회사 재산에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을 인지하는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제보한다.			
우리 부서는 시업시간 이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시업시간과 동시에 업무 또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종업시간 이후에 서류 또는 물품 등을 정리하고 소정 장소에 보관한 후, 회사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에 퇴근하고 있다.				
법인카드 / 예산운용	우리 부서는 사용목적외 특정되어 있는 부서 예산 또는 공금을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회사의 재산(물품)을 사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허위로 경비를 청구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실제 사용처와 사용목적이 부합하는 예산계정으로 정산 처리한다.			
	우리 부서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 예산으로 정산하는 경우 포함)			
	우리 부서는 골프장(용품), 유흥업소, 상품권, 귀금속, 양주 등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물품 기준을 준수한다.			
	우리 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처에서 분할결제(쪼개기)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부득이한 경우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증여하기도 한다.			
	우리 부서는 골프 등 업무 관련 레저활동 계획 시 사전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불가피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법인카드 사용 시 사전/사후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구분	평가사항	예	아니오	비고
개인정보보호	우리 부서는 타인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개인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부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법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우리 부서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이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	우리 부서의 임직원이 관리하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는 암호 등 보안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우리 부서는 사내 컴퓨터를 통한 전자 메일의 송·수신, 파일 복제 등 문서중앙화 관련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보안 관련 임직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생성 또는 관리하는 모든 문서 또는 자료마다 대외비 또는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부정한 Access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우리 부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거래처, 판권처로부터 정당하게 알게 된 영업비밀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복사하여 취득하고 사용·공개한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보안 담당직원 및 보안 관련 책임자가 정해져 있다.			
	우리 부서는 기밀 사항이 담긴 자료를 접근통제장치 등 물리적 보안 조치가 되어있는 별도의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보안 관련 내부 자체점검 등을 수시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회사의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약정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협력업체, 발주처, 정부기관 기타 거래처에 전달하는 정보와 자료에 자료반환, 폐기,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부서의 각 임직원이 관리하는 전자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취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	우리 부서는 협력회사 또는 협력회사 관계자와 업무 외적인 사유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부서는 협력회사 또는 협력회사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 골프, 금품 등을 받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협력회사 또는 협력회사 관계자에게 향응, 접대, 골프,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협력회사 또는 협력회사 관계자와 5만원을 초과하는 과분한 경조금을 주고받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협력회사 또는 협력회사 관계자와 명절선물, 승진선물 등을 주고받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국내의 정부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일반상식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상품권, 식사 대접 등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대학교수나 대학에게 일반상식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상품권, 식사 대접 등 포함)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위와 같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관련 사실을 부서장 또는 CP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경쟁회사와 접촉하여 사업상 비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담합하지 않는다.			
우리 부서는 협력회사와의 계약서를 List화 하여 철저히 관리/운영하지 않고 있다.				
교육 / 전파 / 제보	우리 부서는 JW그룹의 임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사규 및 윤리규범에 대한 (정기/수시)교육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규정 위반 가능성이 큰 임직원 또는 규정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특별 교육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협력업체나 거래처에게 회사의 CP정책 및 시행을 적극 알리고 있다.			
	우리 부서는 법규/윤리규범 위반사례를 발견하거나 윤리경영 우수실천 사례,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제보시스템을 통해 제보한다.			

인사 / 노무

• 회 사 :
 • 작성자 : (직급) , (성명)

• 부 서 :
 • 작성일 : 20 년 월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규정 준수	우리 부서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인사/노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인사 관련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불리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불리하게 변경되는 처우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신고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매월 개별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촉진 하고 있다.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고 법정보존연한을 지키고 있다.			
	우리 부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직원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			
행정 당국에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신고사항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있다.				
인권 보장 관련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인사업무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			
	채용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채용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채용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 수집한다.			
	채용단계에서 지원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채용전형 전형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정보는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다.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건강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다.			
	입사단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고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수집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개인정보 자료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하고 있다.			
	퇴직 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파기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해서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부득이한 경우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증여하기도 한다.			
우리 부서는 골프 등 업무 관련 레저활동 계획 시 사전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우리 부서는 불가피하게 주말 또는 휴일에 법인카드 사용 시 사전/사후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구매

• 회 사 : _____
 • 작성자 : (직급) _____, (성명) _____

• 부 서 : _____
 • 작성일 :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일반공정거래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발주 등 본격적인 거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고 있다.			
	거래상대방(판매대리점, agency, 납품업자 등)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대방(판매대리점, agency,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정사업자에 한하여 가격, 거래조건(수량, 품질)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거래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관리하는 협력업체에게 리베이트(금품, 과도한 수수료, kick-back 등)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고가에 매입하지 않는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이었다면 자가 우리 회사와 새로 계약하는 경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으로써 우리 회사의 경쟁 상대와 거래하지 않을 것 또는 우리 회사 제품의 경쟁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			
	대금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미지급하는 행위도 간혹 발생한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있다.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게 판매/공급할 상품의 가격에 관여하기도 한다.				

생산 / 품질보증

• 회 사 :
• 작성자 : (직급) , (성명)

• 부 서 :
• 작성일 : 20 년 월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규정 및 프로세스 준수	품목허가(신고) 후 허가(신고) 사항에 적합하게 생산하고 있다.			
	제조소/제품과 관련하여 변경허가(신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허가(신고) 절차를 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은 시설기준령에 적합하다.			
	GMP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제조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의 업무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생산관리 의무 등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제조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제조관리자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생산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의료기기)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있다.			
	해당연도 생산실적을 매년 정확하게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허가 없이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무허가 반입된 가공품을 제조·사용 또는 판매하기도 한다.			
	약사법령에서 제조가 금지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보관이 금지된 (원료)의약품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실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품 폐기시 폐기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폐기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수령/보관 하고 있다.				

재무 / 회계

• 회 사 :
• 작성자 : (직급) , (성명)

• 부 서 :
• 작성일 : 20 년 월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회계감사	외부감사인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요청 받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두 제공한다.			
	외부감사가 종결된 이후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 되었음이 발견되더라도 정정공시는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	계열회사에게 금융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금의 약정연체이율이 아닌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등 금융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거나 계열회사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입하지 않는다.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계열회사로부터 고가로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저가에 임대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계열회사에 인력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인건비나 수수료 등을 받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정관상 정해진 통지기간을 준수하여 발송된다.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 운영절차, 결의방법 등 운영에 있어 상법 및 정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장부 보관	주주총회 의사록은 충실히 작성되고 참석 이사, 감사가 날인하여 누락 없이 보관하고 있다.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는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정보존연한을 지켜 보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 회 사 :
 • 작성자 : (직급) , (성명)

• 부 서 :
 • 작성일 : 20 년 월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지적재산권 보호/관리	제3자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List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늘 update 되고 있다. (타부서 등록 IP포함)			
	제품의 발매 전에 IP검토(등록가능성, 침해 및 무효 등)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IP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이 잘 되고 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기한(연차로 납부 기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다.			
	IP검토 미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해 전사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IT

• 회 사 :
 • 작성자 : (직급) , (성명)

• 부 서 :
 • 작성일 : 20 년 월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보안시스템	회사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에 제한이 없다.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폴더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인가 된 P2P, 웹하드, USB 등 외부장치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인이 출력한 출력물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내부 지침에 따른 파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우리 회사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게시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통지한 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있다.			
공정거래	다른 사업자와 직접 IT관련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 회 사 :
• 작성자 : (직급) , (성명)

• 부 서 :
• 작성일 : 20 년 월 일

구분	평가 사항	예	아니오	비고
적용대상 체크	업무상 외부인 미팅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대상자(공직자 등)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요구 내지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재조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법령 또는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금품 등 수수금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외사항 사전 검토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CP팀 또는 CP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	공직자 등으로부터 외부강의 또는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공정경쟁규약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을 책정하고 있다.			
사전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기타 법령과의 우선적용 관계 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CP팀 또는 CP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있다.			
내부보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후에는 반드시 대외적활동결과보고서 또는 경조사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CP담당자의 결재를 득하고 있다.			

MEMO

MEMO
